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10

발의연월일: 2020. 12. 31.

발 의 자:양기대·강준현·김경만

김철민 · 민형배 · 박 정

오영환 · 임호선 · 정필모

허종식 · 홍성국 · 황운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변경등록의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등록과 관련된 물류창고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등록 등의 절차규정에 기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변경등록을"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류창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②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	
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	<u>30</u>
<u>경등록을</u> 하여야 한다.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